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최종 개정일자 : 2026-06-01

MSDS 번호 : AA00200-0000003176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BZ\_BENZENE (daesan)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품의 권고 용도

1. 원료 및 중간체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권고용도 외 사용제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살생물제로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벤젠의 중량 비율이 5퍼센트 초과하는 고무풀에 대해서는 제조 등이 금지됩니다.

무기제주 및 과력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오

다. 공급자 정보

○ 판매자

회사명 : 롯데대산석화 주식회사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대표번호 : (대산공장) 041-689-5114

긴급전화번호 : (방재실) 041-689-5119

팩스 : +82-41-689-5985

## 2. 유해·위험성

가. 유해·위험성 분류

- 인화성 액체 구분 2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
- 발암성물질 구분 1A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구분 1B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구분 1
- 흡인유해성 물질 구분 1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3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 예방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십시오.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십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십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십시오.

P260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십시오.

- 대응

P301+P310 삼켰다면: 의료기관/독성물질센터/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십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십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라벨의 해독제 투여에 관한 보충 지시를 참조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십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십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모래, 건조화학적제 또는 내알콜 폼을 사용하십시오.

-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십시오.

-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경험과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이 제품은 규정대로 사용 및 취급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No.	KE No.	함유량(%)
Benzene	Benzole	71-43-2	KE-02150	100

###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하시오.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다. 흡입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라. 먹었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다.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내알콜포말(알코올 또는 극성용매 혼합물의 경우)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물분무

건조화학적제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일반포말

CO2

○ 부적절한 소화제

고압주수

직접주수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성 생성물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 화재 및 폭발 위험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기타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부분 물보다 가벼우니 주의하시오.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면을 따라 확산하고 저지대나 밀폐공간에 축적될 수 있음.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용용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음.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십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증기발생을 줄이기 위해 증기억제포말을 사용할 수 있음.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매우 미세한 입자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십시오.

옆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향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십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십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건조모래/흙, 기타 비가연성 물질로 덮거나 흡수한 후 용기에 옮기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덮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소화를 위해 제방을 쌓고 물을 수거하십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청결한 방폭 도구를 사용하여 흡수된 물질을 수거하십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7. 취급 및 저장방법

### 가. 안전취급요령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고온에 주의하십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십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십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열에 주의하십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 나. 안전한 저장방법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구성성분	국내기준	ACGIH	생물학적 노출기준
Benzene	0.5ppm TWA 2.5ppm STEL	0.5 ppm TWA 2.5 ppm STEL	15 (Methyl chloroform in endexhaled air, prior to last shift of workweek)10mg /l(Trichloroacetic acid in urine, end of workweek)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해당 물질에 직접적인 접촉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증받은 알맞은 형태의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눈 보호

작업 환경이나 활동 상 먼지나 연무 또는 에어로졸이 많은 조건이 개입될 경우,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손 보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 하십시오.

○ 신체 보호

보호 장갑/보호복/보안경/보안면/귀마개를 착용하십시오.

## 9. 물리화학적 특성

항목	내용	출처
외관		
성상	액체	
색상	무색	ECHA
냄새	방향족	HSDB
냄새역치	4.68ppm	HSDB
pH	자료없음	
녹는점/어는점	5.49°C	ECHA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C)	80.09°C	ECHA
인화점(°C)	-11°C	ECHA
증발속도	자료없음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액체	ECHA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상한값 8.0 %(V) 인화 하한값 1.2 %(V)	ICSC
증기압	9.4 kPa(20 °C)	ECHA
용해도	1.88 g/L (23.5°C, 거의 녹지 않음)	ECHA
증기밀도	2.7 (공기 = 1)	ICSC
상대밀도	자료없음	
n-옥탄올/물분배계수	log Kow 2.13 (20 °C)	ECHA
자연발화온도	498 °C	ECHA
분해온도	자료없음	
점도(mm <sup>2</sup> /s, 40°C)	0.604 mPa.s (25 °C)	HSDB
분자량	자료없음	
밀도	0.876 g/cm <sup>3</sup> (20 °C)	ECHA
비중	자료없음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증기는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증기는 자각 없이 현기증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음.

증기는 점화원까지 이동하여 역화(flash back)할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흡입 및 접촉 시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입힘.

흡입 및 피부 흡수 시 독성이 있을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가열시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 폭발 위험.

격렬하게 중합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음.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고인화성;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됨.

누출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음.

실내, 실외, 하수구에서 증기 폭발 위험이 있음.

인화점이나 그 이상에서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

###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열, 오염.

열.

###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흡.

자극성, 독성 가스.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할 수 있음.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 가능.

###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독성
  - 급성독성물질(경구)
    - LD50 >2000 mg/kg 실험종 : Rat (랫드수, OECD TG 401)
  - 급성독성물질(경피)
    - LD50 >8260 mg/kg 실험종 : Rabbit ((OECD TG 402))
  - 급성독성물질(흡입:가스)
    - 자료없음
  - 급성독성물질(흡입:증기)
    - LC50 10000 ppm 7 hr 실험종 : Rat (OECD TG 403)
  - 급성독성물질(흡입:분진/미스트)
    - 자료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 환경부 고시(구분 2)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 환경부 고시(구분 2)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자료없음
- 피부 과민성 물질
  - 마우스와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과민성 없음
- 발암성물질
  - 환경부 고시(구분 1A)
-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 환경부 고시(구분 1B)
- 생식독성 물질

- ◦발달독성 : (모체독성) 토끼의 경우 자연낙태가 관찰보고됨 (발달독성) 500ppm농도로 7hr/day 노출 시 태아의 crown to rump길이 감소 및 골격의 지연성장이 보고됨. 또한 CFLP 생쥐와 NZ토끼를 대상으로 24HOUR/DAY조건으로 6~15일간 154, 308ppm의 농도로 노출 시 모체의 양수와 태아의 혈액에서 벤젠 검출되었으며 308ppm농도에서 태아의 골격지연성장이 관찰됨. 이를 통해 구분 2로 분류 ◦최기형성 랫드를 이용한 흡입발달독성 시험 결과, 최고농도에서 기형발생에 대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음. NOAEC = 32 mg/m<sup>3</sup> air (OECD TG 414, GLP)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1회 노출)
  - 자료없음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반복 노출)
  - 환경부 고시(구분 1)
- 흡인유해성 물질
  - 환경부 고시(구분 1)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자료없음
- 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환경부(만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3)
- 어류  
LC50 5.3 mg/l 96 hr *Oncorhynchus mykiss*(OECD Guideline 203)
- 갑각류  
EC50 10 mg/l 48 hr *Daphnia magna*(물벼룩독성 : EC50=20.6ppm, 48h국립환경과학원 OECD TG 202)
- 조류  
EC50 29 mg/l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Selenastrum capricornutum*, EC50=32 mg/L 72h, ECHA)

###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분해성  
자료없음
- 생분해성  
50 % 28 day (무산소 조건에서 분해됨 (NITE))

### 다. 생물농축성

- n 옥탄올/물 분배계수  
2.13 log Kow

- 생물농축계수  
5.88 ~ 43.2 (30fresh water, green algae, 3.5 conger, 4.3 gold fish)

라. 토양 이동성  
134.1 Koc (QSAR)

마. 기타 유해 영향  
어류Pimephales promelas: NOEC=0.8mg/L 32d 갑각류Ceriodaphnia dubia: NOEC=3mg/L 7d 조류)  
Selenastrum capricornutum. NOEC : 34mg/L(72HR) ,ECHA

### 13.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합니다.
- 나. 폐기시 주의사항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인가받은 폐기물 관리업체에 보내십시오.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번호(UN No.) : 1114
- 나. 적정선적명 : BENZENE
-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 라. 용기등급 : II
- 마. 해양오염물질 : 해당
-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D
- 육상운송(ADR)  
· Tunnel restriction code : D/E
- 해상운송(IMDG)  
· 해양오염물질 : 해당

- Air transport(IATA)
  - 유엔번호 : 1114
  - 유엔 적정 선적명 : BENZENE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 용기등급 : II

##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금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 노출기준 설정물질
  - Benzene : TWA:0.5ppm STEL:2.5ppm
- 관리대상 유해물질
  - Benzene : 및 이를 0.1 wt% 이상 함유한 제제
- 작업환경 측정물질
  - Benzene : 및 이를 1 vol% 이상 함유한 제제
- 특수건강 진단대상 유해인자
  - Benzene : 및 이를 1 vol% 이상 함유한 제제
- 특별관리물질
  - Benzene : 및 이를 0.1 wt% 이상 함유한 제제
- 허용기준 준수물질
  - Benzene : TWA:0.5ppm STEL:2.5ppm
- 공정안전관리(PSM) 대상물질

- Benzene : PSM 대상물질 (취급: 5,000kg/일, 저장: 200,000kg/일) 인화성 액체

- Benzene : 1)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2)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 해당없음

●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 벤젠 [Benzene] 0.1% 이상 [규정수량(톤)] 고체, 액체, 기체 - 최하위:0.125 하위:5 상위:200

● 생태 유해성물질

- 해당없음

● 제한물질

- 해당없음

● 금지물질

- 해당없음

● 사고대비물질

- 벤젠[Benzene] 85% 이상 [규정수량(톤)] 고체, 액체, 기체 - 최하위:0.05 하위:2 상위:20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물질

- Benzene(I-3) : 함유율(0.1 wt% 이상), 취급량(1 ton/yr)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물질

- 해당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고시일로부터 3년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 해당없음

- 중점관리물질

-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 CMR기존화학물질

- 해당없음

- 기존화학물질

- 해당

- 유해성미확인물질

- 해당없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ℓ

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 Benzene

-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바.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EU - REACH (1907/2006) - Article 59(1) -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 for Authorisation

- unlisted

- Regulation (EU) 2019/1021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unlisted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몬트리올 의정서, ECHA, OECD SIDS, EU IUCLID, HSDB(PubChem), NITE, NTP, ACGIH, IARC, NIOSH, ChemIDplus, EPA, EPIWIN, INCHEM

### 나. 최초작성일자 : 2021-11-19

###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개정 횟수 : 3-1
- 최종 개정일자 : 2026-06-01

### 라. 기타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현재 당사 최선의 지식, 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정보는 제품 자체를 보증하는 기술자료가 아니며, 단지 안전한 취급, 사용, 처리, 보관, 운송, 폐기 및 배출 등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본 정보는 구매자, 취급자 또는 제3자의 화학물질 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권고되지 않는 용도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어떠한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 및 기술적인 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된 내용 및 형식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구매 및 취급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PSM 대상은 해당물질 취급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MSDS의 최신 버전은 롯데대산석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ldpc.co.kr](http://www.ldpc.co.kr))

해당 제품은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Regulation (EU) No. 833/2014)에 언급한 무역 제재 준수해야 하며, 러시아에서 제3국으로의 우회(경유) 및 수출에 대해서도 금지합니다.

KOR/KO